



학교폭력 예방 연수

산내중학교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예훼손 모욕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 상황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적 심부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처벌 유형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4호: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6호: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

8호: 전학: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9호: 퇴학처분: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5.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6.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가. 교내 신고 방법

- 1)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2)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 부여 및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 실시

나. 교외 신고 방법

- 1)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및 117센터에 방문 신고·상담
- 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3)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STEP1 초기대응



인지노력 ☑



신고접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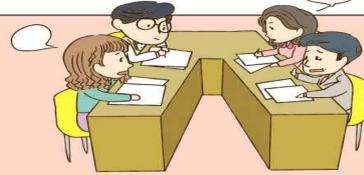


초기대응 ☑

넌 괜찮니?
어떻게 된 일이니?



STEP2 사안조사



전담기구 사안조사 ☑



긴급조치 ☑

STEP3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 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보고

객관적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

STEP4 조치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장 조치 결정 ☑



STEP4 조치수용 및 불복



이후의 지도 ☑



조치이행 ☑

↶ 조치수용

↓ 조치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아동학대 예방 연수

산내중학교

1.

아동학대란

구분	정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 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3.

아동학대 예방 노력

-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남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635-8530~2)
-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훈육이란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5.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635-1391~4)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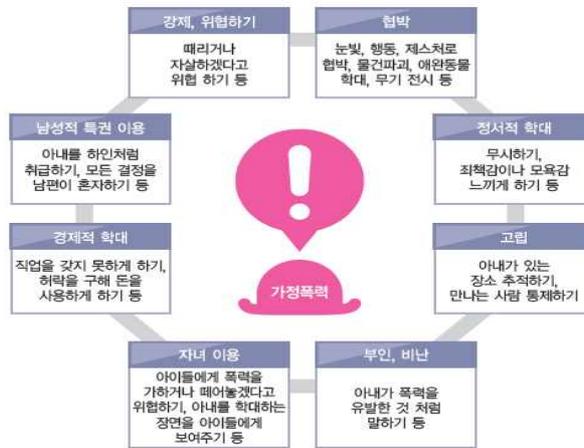


가정폭력 예방 연수

산내중학교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가.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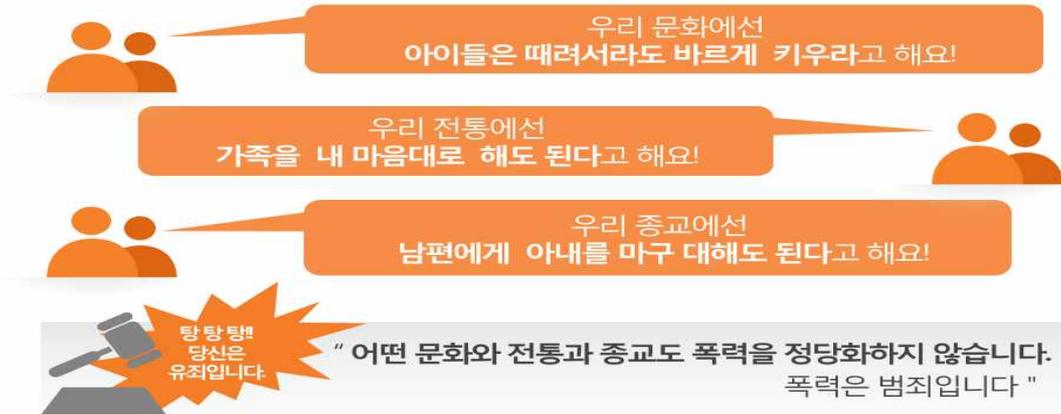
라.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1)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2)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3)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4)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기타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건강가정센터(1577-93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보호
- 지역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쉼터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정기관)
-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지정기관)
- 부부 및 집단 상담
- 지역 관련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 자녀와 함께 생활 (의식주 무료제공)
- 학습지원(비밀 전화 등)
- 자립 지원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



안전사고 예방 연수

산내중학교

1.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과 대처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1.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2.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3.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가정에서 대처방법



- ▶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 ▶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 ▶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 ▶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줌
- ▶ 자녀 칭찬 10계명
 -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2.

게임중독 예방

게임중독예방학부모 10계명

- 첫째. 자녀와 함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규칙 정하기
- 둘째. 자녀가 가입한 웹사이트, 카페 및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기
- 셋째. 온라인에서는 더욱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 넷째. 자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 게임이 무엇인지 알기
- 다섯째. 자녀 수준에 맞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서비스 설정하기
- 여섯째.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 일곱째.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상기 시켜주기
- 여덟째. 디지털기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기
- 아홉째.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도록 하기
- 열째.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불법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3.

교통사고 예방

- ▶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 우측통행 준수 지도
- ▶ 인라인 스케이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지도 (보호장구 착용)
-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

4.

유괴 예방

신학기 대비 실종·유괴 예방 수칙

- ▶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 ▶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 ▶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준다.
- ▶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반복해서 지도한다.

5.

불조심 예방

-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알아봅시다.



-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
-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 피난을 위한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나요?

복도, 계단 등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됩니다. 계단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은 피난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은 개방하여야 합니다.

- ▶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대피로는 알고 있나요? 피난장소는 있나요?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

- ▶ 작은 관심과 노력!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화재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9



학생인권 교육

산내중학교

1. 학생인권의 이해

가.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나. **학생인권:**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다. **학생인권조례:** 인권의 개념과 보호의 범위는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학생인권의 개념 역시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 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학생인권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1991년 국내 비준 등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요구 안에서 자리 잡아온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로 구체화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전라북도 인권옹호관

가. **학생인권의 상담:** 친구나 선후배,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나. **전라북도 인권옹호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2013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인권옹호관 제도

- ① 학생인권문제의 상담과 도움
- ②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 ③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
- ④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이용 가능

3. 쉽게 풀어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제한(학생의 참여로 제·개정된 학교규칙 등)될 수 있다.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교는 두발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학생의 개성 실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참여한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가 의심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규칙에 따라 일정한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방해의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반성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종교 교육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학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는 학생이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는 학생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징계는 학생에 대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복귀를 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징계 내용 등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